

사회복지사의 급여에 관한 미시사 연구

최 옥 채 (전북대학교 부교수)

1.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미시사 연구(微時史 研究, Microhistory Study)를 적용하여 사회복지사가 급여를 받아 살아가는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있다. 즉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연구주제를 풀어헤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경제적 실상을 파악하고, 나아가 급여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심리사회적 분위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이 연구를 위해 사회복지사 1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사양했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 합당한 사회복지사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보통 수준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된 후, 입소문을 통해 전북, 광주, 대전 지역의 중간관리자급 사회복지사를 접촉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시설에 꾸준히 근무해온 자로 이 연구에 동의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약 6개월이 걸렸다. 선정된 연구참여자 J는 1995년에 A복지관에 취업하여 1999년 중간에 퇴직한 후, 2000년에 B복지관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01년에 C복지관으로 옮겨 2007년 현재 13년째 근무하고 있다.

2)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연구자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C복지관에서 J와 심층면접을 실시했으며,

당시 J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사회복지사와 이직한 사회복지사 3명과 A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심층면접 및 논의를 진행했고, 현직은 교수이나 원로 사회복지사 1명과는 논의했다. 아울러 1995년부터 현재까지 J의 급여명세서를 입수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급여와 관련하는 신문 기사를 검색·수집했다.

자료분석은, 첫째, 심층면접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참여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생활을 시간에 따라 요약하여 간략한 개인사를 정리한다. 둘째, 진즈부르그가 명명한 ‘실마리 찾기’(Ginzburg, 2001:55)를 실시한다. 이 작업은 심층면접에서 얻은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진술을 찾아 개념화를 하고, 이들 개념을 바탕으로 주제묶음을 한 후, 주제묶음에 근거하여 핵심주제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수집한 모든 자료와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핵심주제를 풀어 정리한다. 이 작업은 특정 현상에 징후로 드러난 ‘실마리’를 실재에 연결하는 것이다. 넷째, 분석한 전체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참여자가 급여를 받아 꾸린 생활에 관하여 미시사를 쓴다. 이 미시사 쓰기는 핵심주제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므로 특정 현상의 인과논리에 따라 규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3. 문헌고찰(한국의 사회복지사, 급여, 사회복지사의 급여 관련 선행연구)

4. 결 과

1) J의 간략한 개인사

J는 졸업 직전 1월에 선배의 권유와 교수의 추천으로 A 복지관에 취업해 1999년 6월까지 근무했다. A 복지관에 취업하기 전에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급여가 낮다는 것을 선배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A 복지관에 선임사회복지사로 취업하여 첫 봉급으로 639,300원을 받았고, 본봉은 563,000원이었다¹⁾. 이 해에 총 10,592,900원을 받았다. 출퇴근을 위해 200만 원에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 A 복지관을 그만둘 때까지 운행했다. 자동차가 잔 고장을 일으켜 애를 먹었다.

J는 1997년에 IMF가 터지면서 복지관의 상황이 그 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수준의 급여를 불만하기보다는 직장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태도도 예전과 달랐다. 근무 중 흐트러진 모습이 예전에는 더러 용납되었으나 이제는 엄격히 통제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보수표가 없어지고 기관장이 알아서 급여 수준을 책정하여 시행했다.

1) 이때 신입 사회복지사는 본봉으로 440,000원을 받았고, 이해에 본봉 이외로 상여금 400%, 정근수당, 직무수당, 가계보조를 받았다.

J는 2002년에 결혼했다. 결혼을 위해 적금을 들었으며, 월급을 받아 생활하면서 특별히 많이 저축한 것도 없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낸 적도 없었다. 다만 여가를 즐기는데 제약을 받았고, 집안에 중대사가 있어 형제들이 목돈을 각출할 때 어려웠다. 특히 2003년에 첫아이가 태어나고 대학원에 다닐 때는 가계가 적자였고, 이때마다 어머니나 장모의 도움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해결했다. 농사를 짓는 어머니로부터 쌀과 주요 찬거리는 가져다 먹었다. 다른 직에 취업한 친구들의 월급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신입 초기에는 직장을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하여 맞벌이를 하지만 그에 따라 씹씹이도 커져 경제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느낌이다. 아내가 힘들어 그만 둔다고 하면 차마 허락할 수 없어 자존심이 상했고, 아내가 안쓰러웠다.

J는 12년이 지나 1995년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이보다 조금은 나은 길이 있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취업했는데…” 하며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당시에는 보건복지부가 근로기준법에 충족하는 보수표를 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봉을 받으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고, 심각하게 생각하여 불만을 표출한 적도 없이 지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참 어렵게 살았겠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하나 둘 이직해 나가자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J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해 대응할 의지도 있지만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인에 대응해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없고, 급여 문제 해결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이 급여를 올리기 위해 ‘목소리’를 한데 모아 높이지 못하고, 아울러 열악한 처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를 못내 아쉬워할 뿐이다.

J는 낮은 급여 현실을 “항시 채워지지 않는 잔”이라고 하면서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최소한 공무원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사회복지사들이 이직하지 않고 오래 근무할 수 있고, 그래서 노하우가 쌓여 복지관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은퇴 직전까지는 그간 사귄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소규모 시설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2) 실마리 찾아 핵심주제 만들기

연구참여자와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급여 수준이 서로 다름’을 포함하여 총 79개 실마리를 찾았다. 이들 실마리는 ‘급여 수준의 천차만별’을 비롯하여 총 19개로 실마리묶음을 하였고, 이들 실마리묶음을 ‘정부의 부적절한 처우와 사회의 무관심’을 포함하여 총 5개 핵심주제를 이끌어냈다.

3) 핵심주제 풀이

(1) 정부의 부적절한 처우와 사회의 무관심

J가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은 정부의 합당하지 않은 정책 결과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라는 존재를 사회의 구성원들이 관심을 쏟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2) 막연한 기대감

J는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막연히 기대하는 선에 그치고 말았다. 이 같은 J의 태도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정부 측이 사회복지사의 낮은 급여 수준에서 맴돌게 하는 데 빌미를 주었다.

(3) 박봉으로 여유 없는 생활

J는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여가를 즐기거나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4) 불안하고 자존심 상함

J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눈치를 보고, 친구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면서 불안감과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했다.

(5) 힘겹게 살며 소박한 삶을 희망함

J는 경제적으로 비록 힘겹게 생활하지만 소박한 서민의 삶을 꾸리면서 최선을 다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기를 소원했다.

4) J의 급여 관련 미시사

애초 정부가 온전하지 않은 정책을 펼치는 사회복지현장에 뛰어들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일선 사회복지사의 급여 체계를 마치 누더기 깃듯 복잡하게 얽어 볼품없게 만들어 놓았다. 특히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이외에도 매년 1, 2월에는 제 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우 부적절하게 임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처우 받았다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짐을 지워서는 안 될 터인데도 이들은 당연시 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운영 법인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운영 법인 측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심한 경우에는 이기심이 작동되어 부적절하게 복지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덧붙여 사회는 사회복지사가 마치 천

사나 되는 것처럼 박봉에 시달리던, 근무 여건이 열악하던 상관하지 않고 오직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으로만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열악한 처지에 놓임을 공조했다.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일관하며 살아왔다.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했던 것이 특별한 목적을 두었던 것도 아니었다. 복지관에 취업할 때도 근무 여건을 따지지 않고 선배가 권유하여 선뜻 결정했다. 심지어 급여가 얼마인지도 첫 급여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 나만의 이득을 따지는 데는 ‘천연기념물’처럼 무뎠다. 주변 준 대로 받아 기본 경비를 제하고 저축했다. 다른 직에 근무하는 친구가 매월 70여만 원을 저축할 때 20-30만 원을 저축하는 데도 빠듯했다. 주변에서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좋아질 것이라고 할 때,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복지사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들었을 때는 솔깃하기도 했다. 결혼 전까지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크게 어려운 줄은 몰랐다. 결혼하고 나서야 집안의 대소사에 동참하고, 첫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쪼들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때서야 급여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께 신세를 졌고, 더러 장모의 도움도 받았으며, 이도저도 안 되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해결했다.

동료들에 뒤질 수 없어 대학원에 진학하고 나니 경제적으로 받는 압박은 더욱 가중했다. 친구가 많아 어울리는 일도 흔치 않은데 나가는 돈은 점점 많아지니 맞벌이를 해도 별로 좋아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낮게 시작한 급여 수준은 미진하기만 하다.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의 수입은 호박 구르듯 하고, 내 것은 좁쌀 구르듯 한다. 남들은 외국어를 공부한다, 뭘 한다 하며 자기계발에 열을 올리는데, 여가를 활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처질 수밖에 없다. IMF 이후에 중산층이 무너진다고 하더니 아예 서민층에 박혀 떠돌고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사의 연봉이 차상위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기사가 났을 때는 동네사람 보기가 두려웠고, 가끔 친구의 급여와 비교하면서 부러워했던 어머니께 면목이 없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려해도 시간을 제대로 낼 수 없고,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복지관을 그만 두려 해도 갈수록 직장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내 직급에 맞춰 나오는 자리가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도대체 뭘 안다고 사회복지분야가 앞으로 떠오르는 직종이라고 할까. 이렇게 헛바람만 들어 그런지 한 해에 쏟아져 나오는 사회복지사 수가 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이 주변 눈치만 보고 지내야 할 형편이다. 복지관의 재정은 한정되어 오래 근무한 사람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나도 신참 때 고참에게 눈치 했을까. 신입 초기에는 그래도 ‘널널’했던 복지관 분위기가 언제부턴가 ‘빡빡’해졌다. 이럭저럭 지내다 복지관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고려장’ 이야기가 떠오른다. 복지관의 조직 자체에 한계가 있어 더 이상 승진을 확신할 수도 없다. 또 한 후배가 고액의 연봉을 받는 데로 전직했다고 한다. 기분이 막막하다. 내가 10년간 근무해도 다 벌 수 없는 돈을 1년 안에 번다고 옮겼다는 것이다. 벌써 다

섯 번째 ‘선수’가 그 길로 들어섰다.

중간관리자가 되어 가끔 위세도 부러보지만 그것은 잠시고 새로운 고민거리들이 생겨났다. 전보다 책임은 더 커지고, 입장이 서로 다른 윗분들과 아랫분들 사이에서 샌드위치가가 되어야 하고, 복지관 전체 살림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니 시간과 돈은 줄고, 씹씹이와 스트레스는 늘고 있다.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터득한 것이 있다. 이제 더 이상 밀려 살 수는 없다. 단념할 것은 빨리 접고, 나를 더욱 신뢰하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며 철저히 계획에 따라 살아야겠다. 곧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식구도 불어날 것이고, 집 장만도 코앞에 닥쳤으니 더욱 절약하며 좀더 고생을 각오해야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5. 논의

사회복지사로서 J의 낮은 급여 수준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 이후로 국회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조직들이 정부에 대응하는 횡수가 부쩍 늘기도 했다. 이렇게 정부에 대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급여 관련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직 종사자를 제외한 사회 구성원들의 무관심 역시 사회복지사의 낮은 급여 수준을 감싸왔다. 이처럼 사회복지사가 더러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사회복지사가 선행자, 약자를 동정하는 사람,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급진주의자, 빈민 조직가, 중류층을 위한 봉사자 따위로 불리는(Zastrow, 2004:60) 미국에서도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영종(2002:10-12)도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낮은 구조로 자선적 패러다임의 잔재, 사회복지서비스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클라이언트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들었을 것이다.

부적절한 정부의 정책과 함께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도 J의 급여를 열악한 수준으로 방치하는 데 기여했다. 운영 법인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정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충분한 재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J가 경험한 복지관을 벗어나면 재정 사용이 투명하지 못한 사회복지시설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운영 법인이 한결 원칙을 고수하고, 정부에 당당히 대응한다면 J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J는 낮은 급여 수준에 대해 J가 보여준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J의 이 같은 태도는 “사람은 누구나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동안은 그를 둘러싼 현실의 관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김윤식, 1991:305)는 측면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J의 태도가 급여의 낮은 수준을 유발한 직접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 더욱이 이런 문

제를 J 혼자만의 의지나 행동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끝내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이끌어간 점은 J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마땅하다. 예컨대 취업하는 과정에서 복지관 측에 급여 수준을 미리 알아내고, 더 나은 조건의 사회복지 현장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결국 J는 낮은 급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하여 심리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슬기롭게 견디며 충실히 생활을 꾸려나갔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J가 젊어서의 이런저런 욕심을 접고, 소박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J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자존심이 상했고, 날로 복지관의 분위기는 처음 취업했을 때와는 달리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런 상황은 “소외에서 비롯된 정신적 내면화는 자의식을 북돋우며 그런 자아는 밀착되지 못하는 현실에 끊임없는 회의의 눈길을 보낸다”(김진승, 1999:129)고 하는 것처럼 J의 심리상태를 적절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인 고려에서 나온 동기가 자연과학적인 통찰에 의한 동기보다 앞선다”(Elias, 1996:319)는 점에서 J는 낮은 급여에 따른 경제적 압박보다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심리적 고통이 더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가 공공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 임금 관점에서 공무원과 급여 수준이 사회복지사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신용규, 2006:38).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시행하도록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급여 수준이 공무원의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점,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난 점, 지방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제 때 지급되지 않은 점 따위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J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소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